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별로 구분되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 경우에는 일부 정지된 영업에 관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산정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의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비율이 큰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법 위반행위 조사 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법 준수 노력,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로 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법 제5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 매출액(단위: 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	----------------	---------------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10,000 이하	12
2	10,000 초과 20,000 이하	14
3	20,000 초과 31,000 이하	17
4	31,000 초과 43,000 이하	20
5	43,000 초과 56,000 이하	27
6	56,000 초과 70,000 이하	34
7	70,000 초과 86,000 이하	42
8	86,000 초과 104,000 이하	51
9	104,000 초과 124,000 이하	62
10	124,000 초과 146,000 이하	73
11	146,000 초과 171,000 이하	86
12	171,000 초과 200,000 이하	94
13	200,000 초과 230,000 이하	100
14	230,000 초과 260,000 이하	106
15	260,000 초과 300,000 이하	112
16	300,000 초과 340,000 이하	118
17	340,000 초과 380,000 이하	124
18	380,000 초과 430,000 이하	140
19	430,000 초과 480,000 이하	157
20	480,000 초과 540,000 이하	176
21	540,000 초과 600,000 이하	197
22	600,000 초과 670,000 이하	219
23	670,000 초과 750,000 이하	245
24	750,000 초과 860,000 이하	278
25	860,000 초과 1,000,000 이하	321
26	1,000,000 초과 1,200,000 이하	380
27	1,200,000 초과 1,500,000 이하	466
28	1,500,000 초과 2,000,000 이하	604
29	2,000,000 초과 2,500,000 이하	777
30	2,500,000 초과 3,000,000 이하	949
31	3,000,000 초과 3,500,000 이하	1,122
32	3,500,000 초과 4,000,000 이하	1,295
33	4,000,000 초과	1,381

나. 법 제5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

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규모
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